

제184회 임시회

# 심 사 보 고

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#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심 사 보 고

산업경제위원회  
2001. 2. 14.

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동의안 제출 및 회부일자 : 2000년 12월 29일
-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제출 및 회부일자 : 2001년 2월 2일

다. 상정 일자

### ○ 제184회 임시회

-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(2001. 2. 14) 상정, 질의답변, 의결

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농정국장 한 철 환)

가. 제안 이유

-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결정에 따라
-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의 모집 공고전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

## 나. 주요 골자

### ○ 위탁관리 사무

가. 재산의 관리

나. 시설사용료 부과·징수

다. 자연학습원의 공익적 기능에 부합하는 교육·훈련

라. 기타 자연학습원 관리·운영에 관한 제반사무

### ○ 위탁관리 재산

가. 토지 : 17필 45,011m<sup>2</sup> (13,616평)

나. 건물 : 11동 2,560.28m<sup>2</sup> (774평)

다. 시설 : 7종

라. 장비 : 88품목 (216종)

### ○ 위탁관리 기간 : 3년

### ○ 위탁관리의 해지

가.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

나.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

### ○ 시설 및 장비의 관리

가. 시설물의 수선, 기자재의 보수 등 비용은 위탁관리자가 부담

나. 위탁관리에 따른 관리운영일체를 위탁자가 부담

### ○ 보조금 지원

가. 소요경비와 운영수입금을 감안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

나. 연간 ○○○원을 보조금으로 지원

○ 보조금의 사용

가. 자연학습원의 운영·관리의 목적이외의 사용 금지

나. 보조금의 집행은 예산회계처리방법 준용 및 관련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

○ 사업계획서

수탁관리자는 매년 위탁재산의 관리·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

○ 인력 관리

가. 승계받은 인력에 대하여는 승계일 현재 보수수준 이상 유지

나. 본인의사에 반한 부당한 처우 또는 해고 금지

○ 보험가입 및 배상책임

가. 위탁사무 수행시 발생한 사고는 수탁관리자의 책임

나. 위탁재산이 훼손·망실·오손되었을 경우 손해 배상

다. 도지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 가입

○ 지도 감독

가. 도지사는 학습원의 서무처리에 대하여 지도 감독

나. 년1회이상 정기감사 및 필요시 수시감사 실시

○ 명의 사용

가. 대외적 명의를 「충청북도자연학습원」으로 표기

나. 수탁관리자의 명의를 병행표기 가능

○ 협약의 보증

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보조금은 연간 총보증금의 20%로 하고, 총보조금이 연간 1억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박응희)

-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은 충청북도자연 학습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결정에 따라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모집 공고전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
- 동의요구안의 내용중 위탁과정에서 변경이 예상되는 위탁기간 과 보조금액을 사전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됨에 따라 수정안을 검토한 바 수정안 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 생 략 ”

5. 토 론 요 지 : “ 생 략 ”

6. 심 사 결 과 : “ 수정 가결 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 없 음 ”

8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 없 음 ”

## 9. 별첨

- ◎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수정동의
- ◎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수정안
- ◎ 수정안 대비표

#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수정동의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1. 2. 14

제출자 : 장준호 의원

## 1. 수정이유

- 위탁사무 수행시 수탁관리자의 손해 및 배상책임을 확대하고  
협약 불이행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확대하기 위함

## 2. 주요 골자

- 제15조 제3항에 문구삽입  
⇒ “배상책임보험은” 다음에 “갑이 결정하는 상당액 이상으로”
- 제21조 제2항에 이행보증금 상향 조정  
⇒ “20%”를 “30%”로 하고 “2천만원”을 “3천만원”으로  
변경

##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(안) 제15조 제3항의 “배상책임보험은” 다음에 “갑이 결정하는 상당액 이상으로”를 삽입하고

(안) 제21조 제2항의 “20%”를 “30%”로 하고 “2천만원”을 “3천만원”으로 한다.



# 수정안 대비표

현행	수정안
<p>제15조(보험가입 및 손해배상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“을”은 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“갑”을 피보험자로 하는 대인대물을 포함한 손해보험과 <u>배상책임보험</u>은 가입하고 그 증서를 “갑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5조(보험가입 및 손해배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배상책임보험은 갑이 결정하는 상당액 이상으로</u> -----</p> <p>-----</p>
<p>제21조(협약의 보증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이행보증금은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지원하는 연간 총보조금의 <u>20%</u>로 한다. 단 총보조금이 연간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<u>2천만원</u>으로 한다.</p>	<p>제21조(협약의 보증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 <u>30%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3천만원</u> -----</p>